미 국 의 계 란 연 구 및 소 비 자 정 보 법 (3)

(1974年 10月 1日 美公法 第 93—428號)

第11條(修正策에 適用되는 規定) 本規則에 適用되는 本法의 規定은 本規則에 관한 修正案에도 適用된다.

第12條(免除) 다음事項은 本規則에서 規定한 바와 같은 條件과 節次上, 本法의 特殊規定으로 부터 除外된다.

(1) 會費를 納付하여야 할 날로부터 연속 3개월 前 어느 때이든지, 總產卵鷄首數가 3,000首를 超過하지 않는 鷄卵生產者.

(2) 主로 初生雛 鷄化에 利用하는 鷄卵을 生產하는 모든 種鷄.

第13條(會費 償還) 本法의 여하한 規定에도 不拘하고 本法의 權限에 따라 市販鷄卵數에 해당하는 會費를 징수한 鷄卵生產者가 여기서 規定한 計劃을 따르지 않을 境遇, 鷄卵委員會로부터 그 會費의 償還을 要求하여 支拂받을 수 있다. 但, 그러한 要求는 個別的으로 鷄卵委員會에서 規定한 規定과 形式 및 期限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것은 會費를 納付해야 할 달의 말일부터 90日 이내이어야 하고, 그리고 生產者는 償還받을 會費를 納付하였다는 證據가 鷄卵委員會로 하여금 납득이 가야하며 이 要求가 授受된 이후 60日 이내에 支拂되어야 한다.

第14條(請願과 再審) (1) 本 規則과 關係있는 者는 누구나 長官에게 明文化된 請願書를 提出하며, 그에 關聯이 있어 賦與된 規則이나 規定 또는 義務가 法과 符合되지 않음을 陳述하여 修正을 請願하거나 그로부터의 免除를 請願한다. 長官은 規定에 따라서 그 請願書에 關한 公聽會의 機會를 附與한다. 公聽會를 開催한 후 法에 따라 長官은 그 請願書의 提出者에게 最終 決定을 내린다.

(2) 請願者가 그 地方의 市民이거나 그 地方이 主要 養鷄產業地域일 경우 그 地方法院은 그 決定을 再審할 수 있는 司法權이 附與된다. 但, 그에 대한 抗訴는 그 決定日로부터 20日 以內에 提出하여야 한다. 長官에게 抗訴狀의 寫本을 引渡함으로써 訴訟節次에 있어 長官에게 抗訴가 성립된다. 만약 地方法院이 그 決定이 法에 附合되지 않는다고 判斷하면 그 抗訴狀을 長官에게 송환한 다음 法院은 다음과 같이 指示한다. (1)(法院에서 法에 附合된다고 決定하는 것과 같이 長官이 決定하거나, (2) 法이 要求하는 法院의 意見書와 같이 다음에 抗訴를 提起하여야 한다. 本條 (1)項에 準하여 提起된 訴訟을 繫留하여 美國政府나 長官으로 하여금 法 第15條 (1)項에 依據하여 救濟함에 있어 妨害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第15條(施行) (1) 本法에 準하여 制定된 規則이나 規定을 施行하며, 어떠한 者도 그것을 違反하지 못하도록 美國의 地方法院에 司法權을 賦與한다. 단, 長官이 違反事項이 些少할 때는 違反者에게 適切한 書面告示를 하거나 警告함으로써 그 計劃의 施行에 蹉跌이 없다고 認定할 경우, 本法의 어떠한 것도 長官으로 하여금 그 些少한 違反者를 관할 檢察總長에게 照會하겠끔 하지 못한다.

(2) 本法下에서 長官에 依해 制定된 規則內의 規定을 故意的으로 違反한 鷄卵生產者나 기타 違反者, 또는 鷄卵生產者에게 請求한 정

당한 會費나 手數料를 故意的으로 納入하지 않거나 拒否한 者는 美國政府에 依해 提起된 民事訴訟에서 美國政府가 이길 경우, 각 違反事項에 대하여 $1,000 以下의 罰過金에 처한다. 但. 本條의 (1)項과 (2)項은 現在 規定된 損害賠償 또는 今後 本法이나 衡平法에서 規定될 損害賠償에 附加된다.

第16條(團體의 保證) 法15條의 規則制定을 要求하며, 法 8條 (1)項에 의거 指名大會에 參與하는 美國의 鷄卵生產地域內에 있는 市販鷄卵生產者를 代表하는 團體의 適格性을 長官이 保證한다. 이 保證은 다른 有效한 情報에 부가하여 다음 事項들을 포함하는 決定을 내리기 위하여 長官에 의해 明示되고 關聯이 있다고 여겨지는 情報를 가지고 있는 團體가 提出한 實質的인 報告에 根據를 두고 있다.

(1) 그 團體의 現會員이 차지하고 있는 地理的 領域.

(2) 그 團體 現會員의 特性과 規模, 總市販鷄卵生產者에 대한 現會員의 比率, 그 團體에 加入한 그 洲의 會員의 鷄卵生產 現況圖表, 각 洲에 있는 會員이 生產하는 市販鷄卵의 數

(3) 그 團體의 政策을 施行함에 있어 市販鷄卵生產者會員이 차지하는 정도.

(4) 그 團體의 安定性과 持續性에 관한 證據.

(5) 그 團體의 機能.

(6) 本法의 目的에 대한 團體의 能力과 自律性. 但, 그 團體의 適格性을 判斷함에 있어 本源的인 考慮事項은 그 團體의 市販鷄卵生產者 會員이 市販鷄卵의 實質的인 量을 生產하고 있는 實際의 鷄卵生產者로 構成되어 있느냐의 與否에 있다. 長官은 本條에 의거 그 團體가 適格이라고 判斷하면 그것이 그 團體의 適格性에 대한 長官의 最終決定이 된다. 地理的 與件으로 하나 이상의 團體를 認定받아야 하는 地域에서는, 그 團體가 幹部會議를 열어 法 8條에 의거 그 地域의 指名에 관하여 決定을 한다.

第17條(法規) 長官은 本法의 規定을 施行하며, 本法이 長官에 附與한 權限行事에 必要하면 法의 施行과 效力에 關聯있는 法規를 만들 수 있다.

第18條(調査; 召喚; 誓約 및 證言執行權; 法院의 助力) 長官은 本法에 의거 制定한 規則이나 規定에 違背되는 行爲에 鷄卵生產者, 加工業者, 그 밖에 市販鷄卵商人 또는 其他業者가 가담하거나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與否를 決定하며, 本法下에서 長官의 責任을 效率的으로 遂行함에 있어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諸般調査를 實施한다. 이러한 調査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長官에게 證人을 召喚하고, 그들의 出頭를 要求하며, 誓約 및 證言을 執行하고, 證言을 聽取하며, 審問에 관한 適節한 書籍, 文書, 書類의 製作을 要求하는 權限을 附與한다. 이같은 證人의 出席과 여하한 記錄物의 製作은 美國內의 어느 곳에서나 要求할 수 있다. 鷄卵生產者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長官의 命에 不服從하거나 召喚을 拒否할 경우 長官은 美國內 어느 法院이든 調査와 訴訟이 可能한 司法權內에서, 또는 그 사람이 거주하거나 養鷄業을 영위하는 곳의 法院의 助力을 請할 수 있으며, 證人의 出席과 證言 및 書籍, 文書, 書類의 製作을 要求할 수 있다. 또한 그 法院은 그 사람이 長官에게 出頭하게 하며, 만약 命令을 받을 경우, 거기서 기록물을 만들거나, 調査中인 事件을 取扱하는데 證言을 하도록 하는 命令狀을 發付한다. 法院의 그 命令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法廷侮辱罪로써 法院이 處罰한다.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訴訟節次는 그 사람이 거주하거나 발견되는 地方法院관할 구역에서 執行한다.

第19條(分離性) 本法의 어떠한 規定이나 그에 의해 어떤 者 또는 환경에 대한 適用이 無效일 경우, 本法에 있어 다른 者에 관한 有效性과 그 者와 환경에 대한 適用에 관한 有效性은 그로 인하여 影響을 받지 않는다.

第20條(許可) 本法의 規定을 施行하는데 必要하며 다른 方法으로 充當할 수 없는 基金은 國庫 財源에서 充當함을 許可한다. 그렇게 充當된 基金은 本法에 準하여 制定한 規則의 規定을 施行함에 있어 鷄卵委員會의 經費에 支出하지 못한다. 〈끝〉